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료제출명령제도 확대 도입 등〉

■ 유영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247호, 제2205252호,
제2205253호, 제2205254호, 제2205255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II. 검토의견	10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2. 그 밖의 일부개정법률안	21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유명하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4. 11. 5.
- 3) 회부일 : 2024. 11.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填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수급사업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와 동시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자료제출과 관련된 현행법상 규정들을 이와 동일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규정들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통일적 집행을 도모하고 향후 개정시차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

임(안 제29조 및 제35조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유영하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4. 11. 5.
- 3) 회부일 : 2024. 11.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填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각각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9조).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유영하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4. 11. 5.
- 3) 회부일 : 2024. 11.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填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소송 관련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도,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준용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위 제도들을 도입함(안 제34조 제4항).

나. 위 가.에 따라 도입되는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제3항 내지 제4항 신설).

다.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시 동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바, 이 경우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3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유영하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4. 11. 5.
- 3) 회부일 : 2024. 11.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填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소송 관련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도,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준용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위 제도들을 도입함(안 제35조의2제4항).

나. 위 가.에 따라 도입되는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유영하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4. 11. 5.
- 3) 회부일 : 2024. 11.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填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4항, 제41조 및 제4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법원의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 개정안은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록송부요구권을 자료 제출요구권으로 강화하고(안 제110조), 자료제출요구권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

현행	개정안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u>필요한</u>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u>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u> 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① -----그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그 자료-----.
<신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신 설> <신 설> 제112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2. 조사·심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자료 (해당 사건의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4. 영업비밀 자료 ③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료가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2조(비밀유지명령) ① -----
---	---

2. -----

-----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
인-----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

. 다만, 제110조
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현행과 같음)

□ 현행 제110조에서는 제109조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심문 조서 및 그 밖의 증거들)을 송부하도록 요구(기록송부요구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록송부요구제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나 심결을 진행하였다면, 그 자료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증명책임의 부담을 완화하고 법원의 심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임.

□ 기록송부요구권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공정위의 회신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213건의 요구에 대해 91건을 회신하여 평균 회신율이 42.7%에 불과하고, 연도별로는 2020년(45.2%), 2021년(43.3%), 2022년(36.4%), 2023년(40.2%), 2024년(51.6%)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관찰됨.

회신율이 낮은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해 주로 의결서, 결정서 등 공개된 문서²⁾만을 송부하고 있기 때문임.

1) 제109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결서, 결정서, 심사관 전결 경고서, 신고인에 대한 회신문, 시정권고서 등

<최근 5년간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공정위 회신 내역>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요청건수	제공건수	요청건수	제공건수	요청건수	제공건수	요청건수	제공건수	요청건수	제공건수	요청건수	제공건수
서울사무소	11	0	15	1	10	1	16	0	25	10	68	5
부산사무소	3	2	2	1	1	1	5	1	4	2	18	9
광주사무소	4	0	0	0	1	0	2	1	2	1	8	2
대전사무소	3	3	1	0	0	0	0	0	4	1	4	3
대구사무소	3	1	0	0	3	2	0	0	6	2	10	4
기업집단	0	0	0	0	0	0	0	0	1	0	2	1
시장감시	5	2	4	3	0	0	11	9	5	4	21	14
카르텔	3	2	3	3	3	0	8	6	6	5	22	15
기업거래	7	7	4	4	4	4	5	2	9	7	23	19
유통	3	2	1	1	0	0	0	0	0	0	4	3
합계	42	19	30	13	22	8	47	19	62	32	213	91

□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응하고, 영업비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의무를 면제하되, 이 경우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의 자료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임.

- 특히, 개정안은 안 제111조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자료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고(안 제110조

제1항),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영업비밀의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심리(안 제110조제3항 후단), 열람의 범위와 사람의 제한(이른바 ‘in camera’ 제도, 안 제110조제4항 후단), 비밀유지명령제도(안 제112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 소송 상대방의 영업 비밀 보호 등 법익의 균형을 고려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찬성하는 입장임.

- 즉,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원칙적 자료 제출, 예외적 비공개’로 규정하고, 비공개자료라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되 이를 보호할 장치(안 제110조제3항 및 제4항, 제112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통하여 피해기업의 소송지원 강화의 일환으로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자료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봄.

-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대상자의 저항 증가의 우려임. 즉, 개정안과 같이 법원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면 피조사대상자는 소송과정에서 자신의 영업비밀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예측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보다 소극적으로 임할 유인이 있음.

- 또한, 관련 업계 의견으로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예외적 제도임에도 모든 영업비밀 자료에 대해 법원의 판단만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의 대상 확대

- 개정안은 소송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대상을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제1항),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제1항),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제51조제1항)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현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1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	제111조(자료의 제출) ① -----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u>거절</u>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략)	----- ----- ----- ----- -----, ----- -----<u>거부</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현행 제111조제1항은 일방의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게 상대방 당사자가 보유한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하면 법원이 그 자료를 소지한 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명령제도를 두되,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으로 한정하고 있음.

□ 자료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 제347조의 문서제출명령³⁾과 유사한 제도로써 1990년대부터 ‘서류제출명령’이라는 제도로 유지되어 오다,

3)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한미 FTA 등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특허법」⁴⁾, 「저작권법」⁵⁾과 같은 지식재산권법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특칙으로 강화되었음.⁶⁾

나아가 증거의 구조적 편재가 심각한 영역에서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전부개정을 통해 현행법에 도입하였고, 이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었음.

□ 현행법상 자료제출명령은 피해자의 자료 열람 등을 통한 방어권 보호와 자료제출자의 영업비밀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⁷⁾

-
- 4)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제129조의2(정보의 제공) 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 6) 한애라, ‘영업비밀 열람과 보호-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와 그 처분취소소송절차에서의 외부대리인 한정열람을 중심으로’, 사법 제1권 제58호, 2021, p.606
- 7) 제111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즉, 제출된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자료제출자의 영업비밀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출을 거절할 수 있게 하고(법 제111조제1항 단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제시 명령을 할 경우 그 비밀을 보장하며(법 제111조제2항 후단), 필요한 경우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와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in-camera, 법 제111조제3항 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상충되는 법익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두고 있고, 자료제출명령제도의 적용 범위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인행위(법 위반행위)에 따라 달리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 방향은 타당하다고 봄.

□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법원이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업비밀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비록 안 제119조의 비밀유지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영업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경쟁법상 모든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그 밖의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이를 준용하도록 하여 분야별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자료제출 요구 또는 자료제출명령 제도가 통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손해배상책임 관련 조항 도입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하도급	대리점	대규모	가맹	하도급, 대리점, 대규모, 가맹
기록의 송부 등 (공정거래법 §110)	O(준용)	O(준용)	O(준용)	O(준용)	O(준용)
자료제출명령 (공정거래법 §111)	O	X	X	X	O(준용)
비밀유지명령 (공정거래법 §112)	O	X	X	X	O(준용)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공정거래법 §113)	O	X	X	X	O(준용)
소송기록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공정거래법 §114)	O	X	X	X	O(준용)
손해액의 인정 (공정거래법 §115)	O(준용)	O(준용)	O(준용)	O(준용)	O(준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u>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u>	제29조(벌칙) ① ----- ----- ----- -----. 1. ----- -- <u>제3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u> ----- -----
2.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죄는 <u>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u>	2. (현행과 같음) ② ----- <u>제3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u> ----- -----.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

제35조의2(자료의 제출) ① 법원

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
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
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
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
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
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출 대상이
되는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
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
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의 증
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

<삭 제>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

<삭 제>

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명령으로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자가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당사자를 위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자
3.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
하여야 할 준비서면

나.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
하여야 할 증거

다.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

2. 제1호 각 목의 자료에 포함
된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
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
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
비밀의 사용이나 공개를 제
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
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
한 사실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사실

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

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에 따른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⑥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5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삭 제>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3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즉시 그 취소결정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5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비밀유지명령이 모두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열람 등을 신청하였으나 그 절차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밟은 때에는

<삭 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즉시 같은 항에 따라 그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단서에서 같다)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 (그 열람 등의 신청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열람 등의 신청 절차를 밟은 자에게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열람 등의 신청 절차를 밟은 자가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도 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 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① -----
-----그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
-----그 자료-----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2. 조사·심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자료 (해당 사건의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신 설>

③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료가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벌칙) ①·② (생략)	제3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③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신설></u>	<u>④ 제3항의 죄는 제3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u>
<u>③ (생략)</u>	<u>⑤ (현행 제3항과 같음)</u>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	제31조(양벌규정) ----- ----- ----- ----- --제30조(제3항은 제외한다)-- ----- ----- -----

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손해배상 책임)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 ----- ----- ----- ----- -----. 제34조(손해배상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
제39조(벌칙) ① (생략) <u><신설></u>	제3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③ 제2항의 죄는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③ (생략)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
제41조(벌칙)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1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⑤ 제4항의 죄는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⑤ (생략)	⑥·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u>제41조</u>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 같음) 제42조(양벌규정) ----- ----- ----- ----- --<u>제41조(제4항은 제외한다)</u>--- ----- ----- ----- ----- ----- ----- ----- ----- -----
--	---

문 의 처
02)6788-5109